

#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10. 1. 7 조례 제643호  
일부개정 2012. 11. 15 조례 제816호  
(타법규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·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작 홍사용문학관(이하 “문학관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문학관은 화성시 노작로 206에 둔다. (개정 2012. 11. 15)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문학관”이라 함은 전시관, 작은도서관,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.
2. “사용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 활동을 위해 문학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업무 및 기능)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문학관 자료의 수집·전시 및 관람업무
2. 소장품의 보관·진열·고증평가·수리·모사 및 복원
3.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·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
4.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
5. 기타 문학관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(관리·운영 및 위탁) 문학관은 시장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·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7조(감독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조례의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,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학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
3. 수탁관리자의 사업 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학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
4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
5.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
제9조(개관 및 휴관)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1월 1일
2. 월요일(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)
3. 설날 및 추석 연휴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일 전부터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관람시간)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관람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음주,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
2. 위험물을 소지한 자
3.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
4.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12조(사용허가)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용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
### 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

제14조(사용자의 설비 등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·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,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양도 및 전대금지)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제16조(운영지원)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)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화성시 사무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 (개정 2012. 11. 15)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2012. 11. 15 조례 제816호,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